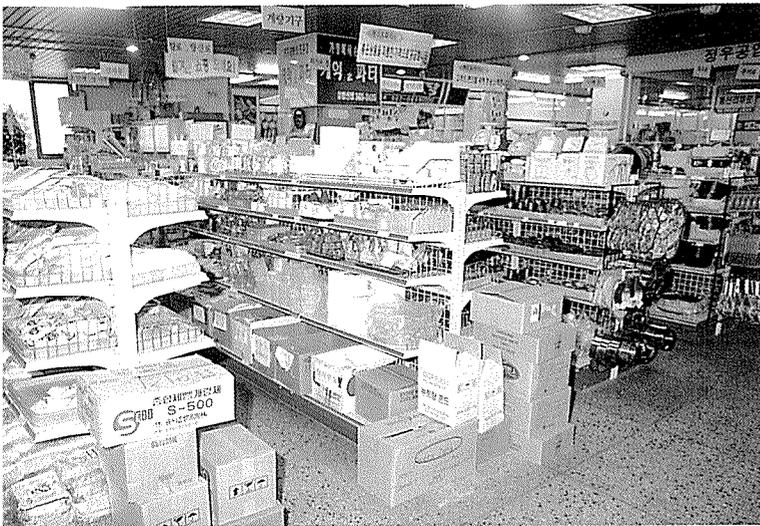


# PL법 시행에 관련 업계 비상 '위해(危害)' 판정에 따라 파급 효과 클 듯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위해 판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 제조업체는 안전대책 수립의 부담을 지게 됐다. 휴게 음식점업에 속하는 베이커리도 PL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취재 : 임희정 lim@mbakery.co.kr〉



## ‘발등의 불’ PL법 대책 마련 시급

PL법(이하 PL·Product Liability)은 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배상을 책임지는 제도. 중소 제조업체가 PL법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에 ‘PL 상담센터’ 및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PL관련 상담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당초 정부에서는 각 업종 단체별로 PL관련 대책 회의를 소집해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전문 PL상담 팀을 설립한 단체는 전기안전협회 한 곳으로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PL에 대한 인식은 물론 대책 마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자금력이나 제조환경이 열악한 대부분의 업체가 PL법 관련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PL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의 형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PL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PL홍보 및 대응사업 마련에 돌입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소송이 일어날 경우 업체에 과중한 책임이 물리는 만큼 PLP(제조물 책임 예방)를 위주로 사업 전개가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대기업에서는 PL전담팀을 구성해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사후 문제 발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소기업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기계업체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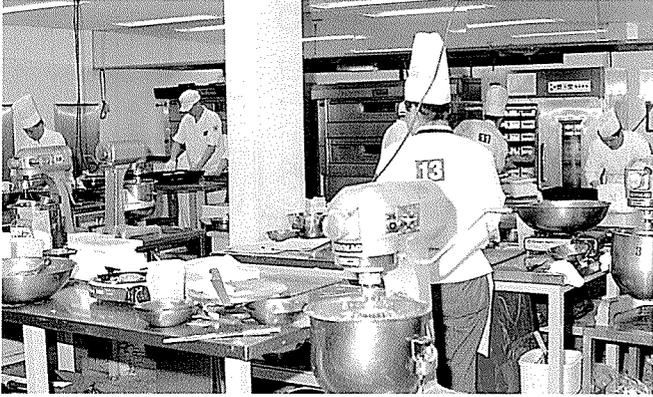
PL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법 시행을 두고 각 중소제조업체가 생산과정상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향후 제품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시일 내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PL법이 시행되면 각 업체의 PL법 대비에 따른 경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이에 기계, 식료품 등 각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체로서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 안는 셈이다. 또한 ‘발등의 불’인 PL법이 시행될 경우, 언론 매체의 영향으로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 안전 사고에 대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손해배상 소송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면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소송비용 등의 손해로 입을 타격이 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각 업체가 PL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베이커리 ‘품질 관리’로 안전 확보해야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기계업체 및 제과점 업주들이 PL법 본격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생산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부각됐다. 대영제과기계



공업, 우정공업 등 기계 업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잦을 것으로 예상돼 제품에 대한 매뉴얼 부착을 강화하고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에 의뢰해 각 부품에 대한 안전검증을 받는 등 제품 안전도 개선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작업장 인원 10명 이상의 일정 규모를 갖춘 기계업체를 위주로 이뤄졌으며 영세한 업체의 경우 PL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및 국내 생산품의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전문 업체의 경우 제조 업체를 포함, 판매 업체가 손배소 책임을 물어야하는 현행법상 상품의 기획, 설계, 판매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계업체는 평소 자사 브랜드에 대해 제기되는 컴플레인을 통계화해 문제되는 부분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제품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과점의 경우 대부분의 제과점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바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어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

날 일은 거의 없다는 분위기지만 PL에 대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식품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제과점의 경우 상하기 쉬운 생크림 케이크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지키고 ‘음식 부패에 따른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산업자원부 김우정 PL팀장이 말했다.

또한, 김우정 팀장은 “각 업체가 주의사항 표시를 가령 ‘상한 제품을 먹을 경우 탈이 날 위험이 높다’는 간접문구에서 ‘이 제품은 어떤 성분이 포함돼 있어 상할 수 있다’라는 직접문구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인체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 업체에게 무조건 과실이 전가되기 때문에 옥수수 분말 등 GMO를 사용하는 제과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면 업체도 이미지 실추와 함께 재산에 손해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소규모의 제과 기계 업체나 자영 제과점의 경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는 일단 PL분쟁에 휘말리면 문을 닫아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품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기계업체는 기계의 제조 공정을 바꾸고 생산 시스템을 개조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업계가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전에 PL컨설팅 업체 및 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해야 PL과고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66**

## 〈결함의 정의〉

### ▲ 제조상의 결함: 설계도면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가령 오븐, 믹서 등을 제조할 때 단열재를 설계상의 도면과 달리 제조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을 때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다.

### ▲ 설계상의 결함: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아닌 경우

설계자체가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 가령, 믹서 등에 안전 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믹서에 안전 덮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손을 다칠 위험이 내재해 있다. 기계 제조업체는 반드시 믹서가 작동할 때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표시상의 결함: 제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가 매뉴얼을 보강해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 통고를 소비자에게 했음을 알려야 한다. 생크림이나 슈크림이 들어간 제품은 상온에서 상하기 쉽다. 점주는 미연에 ‘빨리 먹지 않으면 생크림 성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에 속하는 제과점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PL(Product liability)법이란

30여 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은 그동안 소비자 단체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높여 왔던 법안이다. 가령 식품의 경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상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던 소비자 보호법과 달리 소비자가 공산품으로 인해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PL법에서 밝히는 결함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제도다.

물론 제조품이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이고 제조업자가 위험을 표시하는 문구 등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면책이 부여되거나 배상의 유무가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PL법이 첫 시행되는 만큼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각 업체가 경영 환경을 개선해 PL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전 설계, 제조를 위한 투자비용이 제조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분쟁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손해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기계, 전자, 식품 제품이 안전성을 확보함에 따라 나아가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PL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이자 곧 제조업체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인 셈이다.

### 보험업계 PL보험 급증, 중소제조업체 울상

PL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및 관련 로펌은 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향후 PL시장은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보험업계의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 가입이 절실한 중소 제조업체로서는 PL보험 상품이 일반 보험보다 가격대가 높아 가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측은 'PL법이 시행되면 업체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부담료가 보험 상품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자영 제과점의 경우 개인 보험을 들기 보다 대한제과협회 같은 업종 대표를 통해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각 분야별 PL법 전문가

분야	PL전공분야	소속업체	연락처	이름
제품안전대책	기계, 금속	한국경영컨설팅	(02)711-6184	강선중
	식품	글로벌인터써트인증원	(02)784-0432	공길택
PL 원인규명분야	기계, 금속	산업기술시험원	(02)860-1554	장영권
	식품, 화학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634-0034	박형근
PL보험관리분야	보험관리	중기협중앙회	(02)2124-3082	김기수
		LG화재해상보험	(02)310-6998	송용식
PL매뉴얼작성분야	취급설명서	NGB경영컨설팅	(02)927-0554	맹철영
		이텍스트코리아	(02)2115-2380	정영훈